

2022년 01월 | 건강보험료 고지내역

안녕하십니까?

포교사단인천경기지역단 대표 고객님께 고지된 보험료 내역입니다.

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청구서

사업장명	포교사단인천경기지역단	사업장관리번호	13182737440
사용자명	포교사단인천경기지역단 대표	납부자번호	57071402906 12
예금주명	포교사단인천경기지역단	은행/계좌번호	NH농협은행 / 301007198****
납부할 금액(㉑+㉒)	112,060원	납기내인출일	2022년 02월 10일
납기후청구금액	113,170원	납기후인출일	2022년 02월 25일
건강(㉓)	99,820원	건강(㉔)	원/
장기요양(㉕)	12,240원	장기요양(㉖)	원/
소계(㉓+㉕)	112,060원	소계(㉔+㉖)	원
보험료 연금(㉗)	원	연금(㉘)	원/
고용(㉙)	원	고용(㉚)	원/
산재(㉛)	원	산재(㉜)	원/
보험료합계(㉑)	112,060원	연체금합계(㉑)	원
(㉓+㉕+㉗+㉙+㉛)		(㉔+㉖+㉘+㉚+㉜)	
전자납부번호	57071402906 12		
	청구기간(월분)	납부(이체)금액	출금일
자동이체 영수증 (영수내역)	2021.12	109,240원	2022년 01월 10일
		원	
		원	

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.(고용산재보험료는 납기내 완납 시 각 250원 감액됩니다.)

※ *** 표시는 자동이체로 인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.

※ 국민연금보험료 이메일고지 사업장은 고지금액에 200원이 감액적용되었습니다.

※ 연체금은 정기보험료 지연납부로 일할 계산된 연체금입니다.

※ 계좌 자동이체의 경우 매월 10일(납부일)에 예금잔액부족 시 잔액한도내에서 출금되며 미납보험료는 당월 25일, 다음달 10일, 25일에 연체금을 포함하여 재출금됩니다.(총4회 출금)

※ 카드 자동이체의 경우 매월 10일(납부일)에 출금되며 미납된 보험료는 25일에 연체금을 포함하여 재출금됩니다.(총2회 출금)

※ 재출금일 이전에 징수포털(si4n.nhis.or.kr), 인터넷 지로사이트 또는 가상계좌 (발급문의 : 1577-1000)로 납부시 연체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

2022년 01월 21일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

미납내역 안내

구분	체납기간	체납개월수	합계	보험료	연체금 등
건강보험료		0	0원	0원	0원
연금보험료			원	원	원
고용보험료			원	원	원
산재보험료			원	원	원
합계			0원	0원	0원

※ 미납내역의 연체금은 15일까지 일할계산된 금액입니다.

※ 별도 우편발송된 독촉고지서로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면 16일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금은 다음달 정기고지금액에 포함하여 고지됩니다.

2022년 01월 | 고용보험료 고지내역

안녕하십니까?

포교사단인천경기지역단 대표 고객님께 고지된 보험료 내역입니다.

고용보험료 자동이체 청구서

사업장명	포교사단인천경기지역단	사업장관리번호	13182737440
사용자명	포교사단인천경기지역단 대표	납부자번호	57071402906 73
예금주명	포교사단인천경기지역단	은행/계좌번호	NH농협은행 / 301007198****
납부할 금액(㉠+㉡)	5,300원	납기내인출일	2022년 02월 10일
납기후청구금액	5,340원	납기후인출일	2022년 02월 25일
건강(㉢)	원	건강(㉣)	원/
장기요양(㉤)	원	장기요양(㉥)	원/
소계(㉢+㉤)	원	소계(㉣+㉥)	원
보험료 연금(㉦)	원	연금(㉧)	원/
고용(㉧)	5,300원	고용(㉨)	원/
산재(㉩)	원	산재(㉪)	원/
보험료합계(㉠)	5,300원	연체금합계(㉠+㉢+㉤+㉥+㉦+㉧+㉨+㉩+㉪)	원
전자납부번호	57071402906 73		
자동이체 영수증 (영수내역)	청구기간(월분) 2021.12	납부(이체)금액 5,050원	출금일 2022년 01월 10일
		원	
		원	

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.(고용산재보험료는 납기내 완납 시 각 250원 감액됩니다.)

※ *** 표시는 자동이체로 인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.

※ 국민연금보험료 이메일고지 사업장은 고지금액에 200원이 감액적용되었습니다.

※ 연체금은 정기보험료 지연납부로 일할 계산된 연체금입니다.

※ 계좌 자동이체의 경우 매월 10일(납부일)에 예금잔액부족 시 잔액한도내에서 출금되며 미납보험료는 당월 25일, 다음달 10일, 25일에 연체금을 포함하여 재출금됩니다.(총4회 출금)

※ 카드 자동이체의 경우 매월 10일(납부일)에 출금되며 미납된 보험료는 25일에 연체금을 포함하여 재출금됩니다.(총2회 출금)

※ 재출금일 이전에 징수포털(si4n.nhis.or.kr), 인터넷 지로사이트 또는 가상계좌 (발급문의 : 1577-1000)로 납부시 연체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

2022년 01월 21일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



미납내역 안내

구분	체납기간	체납개월수	합계	보험료	연체금 등
건강보험료			원	원	원
연금보험료			원	원	원
고용보험료		0	0원	0원	0원
산재보험료			원	원	원
합계			0원	0원	0원

※ 미납내역의 연체금은 15일까지 일할계산된 금액입니다.

※ 별도 우편발송된 독촉고지서로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면 16일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금은 다음달 정기고지금액에 포함하여 고지됩니다.

2022년 01월 | 산재보험료 고지내역

안녕하십니까?

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 대표 고객님께 고지된 보험료 내역입니다.

산재보험료 자동이체 청구서

사업장명	포교사단인천경기지역단	사업장관리번호	13182737440
사용자명	포교사단인천경기지역단 대표	납부자번호	57071402906 71
예금주명	포교사단인천경기지역단	은행/계좌번호	NH농협은행 / 301007198****
납부할 금액(㉠+㉡)	15,130원	납기내인출일	2022년 02월 10일
납기후청구금액	15,280원	납기후인출일	2022년 02월 25일
건강(㉢)	원	건강(㉣)	원/
장기요양(㉤)	원	장기요양(㉥)	원/
소계 ㉢+㉤	원	소계(㉣+㉥)	원
보험료 연금(㉦)	원	연금(㉧)	원/
고용(㉨)	원	고용(㉩)	원/
산재(㉪)	15,130원	산재(㉫)	원/
보험료합계(㉠)	15,130원	연체금합계(㉠+㉢+㉤+㉥+㉦+㉧+㉨+㉩+㉪+㉫)	원
전자납부번호	57071402906 71		
청구기간(월분)	2021.12	납부(이체)금액	14,880원
자동이체 영수증 (영수내역)			2022년 01월 10일

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.(고용산재보험료는 납기내 완납 시 각 250원 감액됩니다.)

※ *** 표시는 자동이체로 인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.

※ 국민연금보험료 이메일고지 사업장은 고지금액에 200원이 감액적용되었습니다.

※ 연체금은 정기보험료 지연납부로 일할 계산된 연체금입니다.

※ 계좌 자동이체의 경우 매월 10일(납부일)에 예금잔액부족 시 잔액한도내에서 출금되며 미납보험료는 당월 25일, 다음달 10일, 25일에 연체금을 포함하여 재출금됩니다.(총4회 출금)

※ 카드 자동이체의 경우 매월 10일(납부일)에 출금되며 미납된 보험료는 25일에 연체금을 포함하여 재출금됩니다.(총2회 출금)

※ 재출금일 이전에 징수포털(si4n.nhis.or.kr), 인터넷 지로사이트 또는 가상계좌 (발급문의 : 1577-1000)로 납부시 연체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

2022년 01월 21일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



미납내역 안내

구분	체납기간	체납개월수	합계	보험료	연체금 등
건강보험료			원	원	원
연금보험료			원	원	원
고용보험료			원	원	원
산재보험료		0	0원	0원	0원
합계			0원	0원	0원

※ 미납내역의 연체금은 15일까지 일할계산된 금액입니다.

※ 별도 우편발송된 독촉고지서로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면 16일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금은 다음달 정기고지금액에 포함하여 고지됩니다.

산출내역 (총 합계)

■ 건강/장기요양보험료

구분	건강보험료(㉓)	장기요양보험료(㉔)
고지인원		1명
①산출보험료	49,910원	6,120원
②정산보험료	0원	0원
③가입자보험료 (①+②)	49,910원	6,120원
④사용자보험료	49,910원	6,120원
⑤선납보험료	0원	0원
⑥환급금이자	0원	0원
⑦지원금 및 충당 ·수납액 등	0원	0원
⑧고지보험료 (③+④+⑤+⑥-⑦)	99,820원	12,240원
⑨연체금	0원	0원
납부할금액 (⑧+⑨) (건강+장기요양)		112,060원

■ 연금보험료

구분	연금보험료
고지인원	명
①당월분보험료	원
②소급분보험료	원
③분할납부중인 보험료	원
④두루누리지원금	원
⑤지원금 및 충당·수납액 등	원
⑥납입고지액 (①+②+③-④-⑤)	원
⑦당월분 차감잔액	원
⑧ 고지보험료	원
⑨연체금	원
납부할금액(⑧+⑨)	원

■ 고용보험료

구분	실업급여보험료	고용안정/ 직업능력개발보험료
고지인원		1명
①월별보험료	22,840원	3,570원
②정산분 는 일시납 보험료 분할 1차	0원	0원
②정산분 는 일시납 보험료 분할 2차	0원	0원
③지원금 및 충당 ·수납액 등	0원	0원
④보수충액전자신고 경감		0원
⑤두루누리지원금	18,260원	2,850원
⑥고지보험료 (①+②-③-④-⑤)	4,580원	720원
⑦연체금		0원
납부할금액 (⑥+⑦)		5,300원

■ 산재보험료

구분	산재보험료 (임금채권 석면분담금포함)
고지인원	1명
①월별보험료	15,130원
②정산분보험료	0원
③지원금 및 충당·수납액 등	0원
④보수충액 전자신고 경감	0원
⑤고지보험료 (①+②-③-④)	15,130원
⑥연체금	0원
납부할보험료 (⑤+⑥)	15,130원

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별 산출내역 표기를 중단합니다.
개인별 산출내역이 필요한 경우, EDI 및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(sj4n.nhis.or.kr)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»

알려드립니다

■ 보험별 부과 문의사항 안내

- ▷ 건강보험료 문의 : 1577-1000
- ▷ 연금보험료 부과문의 : 국번없이 1355
- ▷ 고용,산재보험료 문의 : 1588-0075

■ 건강·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 안내

- ▷ 개정내용: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(9% → 5%)인하
 - (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)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보험료의 1천5백분의 1씩 가산
 - (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) 매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보험료의 6천분의 1씩 가산, 최대 5%
- ▷ 적용시기
 - 시행일: 2020. 1. 16.(2020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)
 - ※ 2020년 1월 16일부터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부터 인하된 연체요율 적용
 - 2019년 12월분 보험료까지는 기존 연체요율이 적용됩니다.

■ 일자리 안정자금 대납지원 사업장 지원금액 안내

- ▷ 일자리 안정자금 대납지원 사업장은 산출내역 항목 중 지원금 및 총당·수납액 등에 4대보험료 지원금액이 포함되어 표기됩니다.
- ▷ 세부지원내역은 근로복지공단(www.kcomwel.or.kr, 대표번호 : 1588-007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4대 사회보험료(건강, 연금, 고용, 산재)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.

- 납부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입니다.

■ 4대 사회보험료 납부방법 안내 (관련 문의는 지사 또는 고객센터(대표전화 1577-1000)로 하시기 바랍니다.)

납부 방법	납부 가능 시간	수납 기관
계좌	매월 말일 또는 납기일	각 금융기관 및 증권사, 공단(대표전화 1577-1000), 인터넷 지로,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신청 가능
자동이체		
카드	매월 납기일	공단(대표전화 1577-1000),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, 카드사에서 신청 가능
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(si4n.nhis.or.kr)	계좌이체 (07:30~23:30) 신용(체크)카드 (04:00~23:30)	은행즉시이체(기업, 신한은행 계좌 보유 고객) 또는 가상계좌 발급신청 신용카드 납부(선불카드, 해외발급카드는 불가)
전자납부	금융기관별 다름 (00:30~23:30)	인터넷지로(giro.or.kr)·모바일지로 →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CD/ATM, 금융기관 인터넷·모바일뱅킹→계좌이체
은행 등 영업점 납부	은행영업시간	각 금융기관 및 증권사
고지서 입금전용계좌	07:30~23:30	각 금융기관 창구, 홈페이지, 모바일앱 등 ※납기일 이후 납부 불가
편의점		현금(300만원 한도) 및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 (신한, 우리 외 타 은행카드 이용 시 이체수수료는 납부자 부담)
QR코드	00:10~23:40	카카오톡>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 가능 (금융기관별 점점시간에 카카오페이가 충전 불가)
납부 카카오페이		

※ 독촉고지서로 납부 시 연체금이 실시간 계산되어 고지서 상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1. 4대 사회보험료 등은 납부 후 취소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2. 카드납부 시 수수료(납부금액의 0.8%(체크 0.5%))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.
3. 지사 창구에서는 신용(체크)카드 납부만 가능합니다.(현금수납은 은행창구 및 편의점 이용)
4.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내용은 지사 또는 고객센터(대표번호 1577-10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자동이체 안내

- ▷계좌 : 자동이체 출금일에 예금잔액 부족 시 잔액 한도 내에서 출금됩니다.
 - 잔고부족 등으로 정기출금일(10일)에 미출금된 경우,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하여 출금
 - 출금일 : 매월 10일, 25일, 다음달 10일, 25일 ☞ 미납 시 독촉고지서 발송
(이체희망일을 말일로 신청한 경우 말일 청구 후 미납시 정기출금일(10일)에 추가 청구됨)
- ▷신용카드 : 카드납부수수료(납부금액의 0.8%(체크카드 0.5%))는 본인부담이며, 보험료에 포함하여 청구됩니다.
 - 출금일 : 매월 10일(납기내), 25일(연체금포함 재출금) ☞ 미납시 카드자동이체 직권해지
- ▷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은 미납보험료를 다음 출금예정일 이전에 미리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(1577-1000) 또는

공단 지사로 연락주시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
■ **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**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, 그와는 별도로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 또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

- ▷ 건강보험(장기요양보험 포함) : 이의신청(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)
- ▷ 국민연금 : 심사청구(국민연금법 제108조)
- ▷ 고용·산재·임금채권부담금·석면피해구제분담금 : 행정심판(행정심판법 제3조)

■ **코로나19 관련 4대보험 지원 안내**

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4대보험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주신 사업장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최근 코로나-19 확산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 연장 또는 연체금이 면제됨을 안내드리니, 희망하시는 사업장은 공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▷ **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, 1인 자영업자, 특수고용사업장**

- 미납 보험별: 고용/산재는 납부기한 연장 대상('22.1월 ~ '22.3월분)
※납부기한 3개월 연장('22.1월분은 2022.2.10 → 2022.5.10.으로 납부기한 연장)

▷ **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 신청방법**

- 1) 신청기한 및 신청서류
 - 미납보험별: 고용/산재보험(납부기한 연장 대상)
※ 신청기한: 2022.4.11까지
※ 신청서류: 온라인 신청 시(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) 필요없음.(단 팩스 또는 우편 신청 시 납부기한 신청서)
- 2) 신청방법: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(<https://si4n.nhis.or.kr>), 관할지사 팩스 또는 우편
 - 일괄신청 가능하나 미납보험료에 대해서만 소급적용 가능
※ 단, 2022.4.11.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는 신청 및 소급적용 불가

▷ **관광·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(여행업, 공연업, 관광숙박업, 관광운송업)**

- 미납 보험별: 건강/연금은 연체금 면제 대상('20.3월 ~ '22.3월분)
고용/산재는 납부기한 연장 대상('20.3월 ~ '22.3월분)
※납부기한 6개월 연장('21.4월분은 2021.5.10 → 2021.11.10.으로 납부기한 연장)

▷ **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(항공기취급업, 전시업, 면세업, 국제회의업, 공항버스)**

- 미납 보험별: 건강/연금은 연체금 면제 대상('20.4월 ~ '22.3월분)
고용/산재는 납부기한 연장 대상('20.4월 ~ '22.3월분)
단, 면세점 협력업체는 '20.12월~'22.3월분, 면세 관련 환급청구운영사업자는 '21.4월~'22.3월분 연장 지원
※납부기한 6개월 연장('21.4월분은 2021.5.10 → 2021.11.10.으로 납부기한 연장)

▷ **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**

(영화업, 수련시설, 유원시설, 외국인 전용 카지노, 항공기 부품 제조업, 노선버스(준공영제 제외))

- 미납 보험별: 건강/연금은 연체금 면제 대상('21.4월 ~ '22.3월분)
고용/산재는 납부기한 연장 대상('21.4월 ~ '22.3월분)
※납부기한 6개월 연장('21.4월분은 2021.5.10 → 2021.11.10.으로 납부기한 연장)

▷ **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신청방법**

- 1) 신청기한 및 신청서류
 - 미납보험별: 건강/연금(연체금 지원대상)
※ 신청기한: 해당 월 납부기한까지
※ 신청서류: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서
 - 미납보험별: 고용/산재(납부기한 연장 대상)
※ 신청기한: 해당 월 다음달 10일까지
※ 신청서류: 납부기한연장 신청서
- 2) 신청방법: 관할지사 팩스 또는 우편
 - 일괄신청 가능하나 소급적용 불가

▷ **기타사항**

- 홈페이지(<https://www.nhis.or.kr>)> 민원신청> 서식자료실> 보험료징수> 서식 다운로드
- 상담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또는 관할지사

■ **건강(요양)보험료 환급금 선납대체 제도 안내**

▷ 건강(요양)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료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당월 납부할 보험료에서 선납대체(차감)후 차감 고지합니다.

▷ 선납대체 금액의 환급을 원하시면 지급신청 후 납부기한 내 반드시 당월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야 하며, 자동이체 보험료는 청구의뢰 전이면 지급액만큼 자동 증액되어 청구됩니다.

■ **4대 사회보험료 체납보험료 미납 시**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 및 금융자산의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▷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, 국민연금법 제95조 제4항,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

■ 고용-산재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확대 안내

▷ 의무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장 또는 지정된 납기일 연장 사유에 따라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장(2022.1.1. 시행)은 분할납부 신청 가능합니다. (체납한 개월 수 만큼 분납가능하며 최대 24회, 연장된 납부기한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최대 36회)

※ 납기일 연장사유 대상: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,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사업장,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

▷ 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 시행규칙 제32조의4에 따라 사업주 보유 소득 및 재산과표 기준액 이하일 경우만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승인이 되므로 자세한 상담은 전화 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본 메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 드리는 전자 고지 서비스입니다.

우)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(반곡동) 국민건강보험공단 | 민원상담 1577-1000

COPYRIGHT© 2017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LL RIGHTS RESERVED.